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 천 광 역 시 친 환 경 농 업 육 성 조 례 안 입 법 예 고

1. 제정 이유

- 가.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나.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친환경농업” 이라 할 수 있음
- 다.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 책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 나.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수당 등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라.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안 제8조)
- 마. 교육 및 훈련 (안 제9조)

- 바. 친환경농업기술의 홍보 및 체험 (안 제10조)
- 사.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안 제11조)
- 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7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규정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을 받는 학교와 시설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의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3.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계획

4.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계획

5.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농촌관광,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계획

6.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활성화 계획

7. 실천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

② 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구청장은 시의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련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친환경농업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단체 및 기관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농업기술의 홍보 및 체험)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농촌관광 및 주말·체험영농과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인증기관 및 전문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및 소비촉진) 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거래의 확대에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제품개발, 대량수요처 발굴,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개정 2001.1.26>)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2.12.30>

③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11.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개정 2001.1.26>) ①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개정 2001.1.26>) ①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개정 2001.1.26>)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개정 2001.1.26>)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개정 2001.1.26>) ①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개정 2001.1.26>)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 한다)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②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개정 2001.1.26>)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할 수 있다.

제20조 (우선구매)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단체의 장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농업 관련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식품산업본부장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농림수산물식품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소속 임·직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4.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8인 이내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